

감 사 원

통보(시정완료)

제 목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전기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소 관 기 관 전라북도

조 치 기 관 전라북도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북도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전주시 등 13개 시·군에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하여 도세인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따르면 시·군은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과 제9조 제4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르면 3,000kW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⁹³⁾를 받아야 하고, 전기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발전시설)를 설치한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이하 “사업개시 신고”라 한다)하도록⁹⁴⁾ 되어 있다.

93) 전라북도의 경우 100kW 이하의 설비는 시·군에 허가 권한을 위임(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등의 재위임 허용” 2013. 8. 22. 시행)

94) 전라북도(산업진흥과)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사업개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전기설비가 위치하고 있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4항과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기사업자가 임야나 전·답 등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정지 작업 등이 수반됨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수적으로 발생되어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시점에는 사실상 지목변경(전·답→잡종지 등)이 발생하게 되나 전기사업자들은 시·군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개시 신고만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세정과)는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기사업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 ~ 5. 18.) 중 전라북도에 사업개시 신고를 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전라북도 관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 실태를 확인한 결과, [별표] “전기설비 사업개시 신고 전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현황(2014년~2018년 5월)”과 같이 전주시 등 13개 시·군이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총 114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계

는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전력생산 개시)하도록 하고 있음

161,111,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전라북도는 2018. 5. 28.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북도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전기설비 사업개시 신고 수리 여부를 해당부서가 시·군에만 통보하고 세무부서에는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그동안 지도·감독이 어려웠다고 하면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취득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라북도 자체 세무조사 시 이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2018. 6. 19. 전주시 등 13개 시·군으로 하여금 [별표] “전기설비 사업개시 신고 건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현황(2014년~2018년 5월)”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계 161,111,520원을 부과·징수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전라북도지사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별표]

전기설비 사업개시 신고 건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현황(2014년~2018년 5월)

(단위: 건, 원)

구분	건수	취득세 등 미부과 금액 (가산세 포함)
익산시	13	16,379,350
김제시	24	10,494,410
군산시	6	12,109,030
순창군	3	3,373,190
임실군	3	1,862,150
정읍시	15	4,847,260
전주시	1	3,817,240
고창군	11	5,644,990
진안군	4	7,299,700
남원시	14	15,861,830
장수군	7	7,670,240
부안군	3	631,350
완주군	10	71,120,780
계	114	161,111,520

주: 1. 취득세 등 산출 기준일은 2018. 6. 1.

2. 100kW 초과 ~ 3,000kW 이하의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전라북도 제출자료 재구성